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Q&A

질문내용	쪽
Q1.육아휴직장려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3
Q2.지원자격(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Q3.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3
Q4.엄마, 아빠가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3
Q5.다문화,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3
Q6.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한가요?	3
Q7.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4
Q8.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4
Q9.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수정할 수 있나요?	5
Q10.신청 후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
Q11.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과 중복지급 가능한가요?	5
Q12.'22년 12월 육아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5
Q13.지원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만 되나요?	5
Q14.자영업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6
Q15.현재 육아휴직 중이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6
Q16.주민등록이 타 시·도(경기도 등)에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실거주지 서울)	7
Q17.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소지는 상관이 없나요?	7
Q18.쌍둥이인 경우 육아휴직 연속 1년 사용하면 240만원 받을 수 있나요?	7
Q19.8개월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 시 60만원만 받는 것인가요? 연속 8개월이니 80만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8
Q20.'부', '모' 둘 중 한 명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했다면 다른 배우자의 소득유형(자영업자 등)에 관계없이 본인의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8
Q21.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시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8
Q22.부모가 외국인 자녀도 외국인인 경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8
Q23.가구당 최대 240만원이 자녀 1명당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녀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가구당 지급인가요?	9
Q24.재혼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9
Q25.'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9
Q26.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발급이 안되는데 신청자의 가구원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10

질문내용	쪽
Q27.이직 후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10
Q28.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직원(서울시 산하기관 등)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10
Q29.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 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 했습니다. 현재는 퇴사 후 고용보험 미가입된 상태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10
Q30.'22년 12월~'23년 2월까지 임신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3년3월~'23년 6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 후 '23년 7월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11
Q31.'22년 4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22년 7월에 복직 했습니다. 이후 '23년 5월부터 6개월을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1
Q32.자격심사는 누가 하나요?	12
Q33.육아휴직을 6개월 연속 사용해야 하나요?	12
Q34.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안되나요?	12
Q35.장려금 1차분과 2차분 일괄 신청이 가능한가요?	12
Q36.육아휴직 기간 일할계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12
Q37.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3
Q38.가구원이 해외 장기체류 시 가구원에 포함하나요?	13
Q39.부모가 법정 이혼 시 장려금은 '부'와 '모'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4
Q40.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4
Q41.소득조사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15
Q42.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5
Q43.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15
Q44.가구원수 산정시점은 언제인가요?	15
Q45.12개월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직장을 12개월보다 적게 다닌 경우 등)	15
Q46.정산보험료도 평균액 산출 시 포함 되나요?	16
Q47.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후 부부소득 합산을 하면 되나요?	16
Q48.장려금 지급은 누가 하나요?	17
Q49.장려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7

Q1

육아휴직장려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Q2

지원자격(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고
- ②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 ③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고
- ④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 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3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 본인 인증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엄마, 아빠가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충족 시 각각 휴직 또는 동시 휴직과 관계없이 엄마, 아빠 모두 장려금(가구당 최대 240만원/자녀 한 명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다문화,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Q6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Q7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은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육아휴직 종료 12개월 이내)을 따름

Q8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필수)

※ (인터넷발급) 고용보험누리집, (방문발급) 관할 고용센터

② 배우자 또는 자녀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 (인터넷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발급) 동주민센터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확인이 어려울 시 통장내역(해당 시)

④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필수) ※ (인터넷발급) 인터넷 banking 누리집

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해당 시)

※ (인터넷발급) 복지포 누리집, 정부24

⑥ 부부가 법적 이혼 시 친권자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해당 시)

※ (인터넷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방문발급) 동주민센터

⑦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필수)

※ (인터넷발급) 정부24, (방문발급) 동주민센터

⑧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 (인터넷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누리집, (방문발급) 건강보험공단지사

⑨ 임신 중인 태아가 있을 시(해당 시)

※ (방문발급) 가까운 산부인과

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당 시)

※ (인터넷발급) 정부24, (방문발급) 동주민센터

Q9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수정할 수 있나요?

매월 15일 신청이 마감되기 전까지 수정 및 서류 교체 가능합니다.

Q10

신청 후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15일까지 신청 건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월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매월 15일 이후 신청 건은 다음 달에 처리됩니다.

Q11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과 중복지급 가능한가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따라 서초구의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는 엄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빠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은 서초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엄마) 서울시 50% / 서초구 50% (아빠) 서초구 100%

Q12

'22년 12월 육아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22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을 계속 연속해서 사용하더라도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3년 1월 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Q13

지원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공무원, 교사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나, 고용보험법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 수당을 수급 하므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Q14

자영업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특고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는 '임금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불가능 하므로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15

현재 육아휴직 중이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사업장 자체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육아휴직 기간 1년은 법적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 기준보다 사업장 자체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의거 더 오래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지만,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기에 회사 자체적인 인사규정, 취업규칙에 의거 1년보다 더 오래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회사 자체적인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거 회사에서 임금은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 대상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사람이므로 회사 자체 규정으로 1년보다 길게 육아휴직을 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법 제70조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 (예시) 김서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적인 내부 인사규정에 의거 육아휴직을 2년 동안 보장하고, 1년간은 고용보험

기금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나머지 1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 받는다고 가정 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1년 동안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했다면, 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나 나머지 1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16

**주민등록이 타 시·도(경기도 등)에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실거주지는 서울)**

서울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타 시·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7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소지는 상관없나요?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자녀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18

**쌍둥이인 경우 육아휴직 연속 1년 사용하면 240만원 받을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 신청 시 대상 자녀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쌍둥이를 자녀들이 있더라도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총 2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급여 역시 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려금 역시 육아휴직 1년 연속 사용 시 120만원 지급 받습니다. 즉, 쌍둥이 첫째를 대상으로 1년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급여 수령 하면 장려금 120만원을 받고, 다음 해에 쌍둥이 둘째를 대상으로 1년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급여 수령 하면 장려금 120만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19

8개월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 시 60만원만 받는 것인가요?
연속 8개월이니 80만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본 사업의 취지는 육아휴직의 장기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6개월 연속해서 육아휴직 시 60만원, 12개월 육아휴직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8개월 연속 육아휴직 시
60만원만 수령합니다.

Q20

‘부’, ‘모’ 둘 중 한 명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했다면 다른 배우자의 소득유형(자영업자 등)에 관계없이
본인의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배우자의 소득유형은 상관 없이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후 육아
휴직 급여를 수급했다면,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Q21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시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자격조건 만족 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 시 육아휴직 대상 자녀명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다르고 본 장려금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2

부모가 외국인 자녀도 외국인인 경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외국인이고 자녀가 한국인인 경우도 조건 만족 시 지원
가능하며, 부모가 외국인이고 자녀 역시 외국인인 경우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건강보험의 경우 의무) 조건 만족 시 고용보험법에
의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 충족 시
부모가 외국인이고 자녀도 외국인인 경우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23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 자녀 1명당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녀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가구당 지급인가요?

가구당 1자녀에 대해서 최대 240만원 지급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 있는 부부가 첫째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12개월씩 받았다면 장려금 120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총 240만원을 받습니다. 둘째를 대상으로 또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12개월씩 받았다면 장려금 120만원을 또 각각 지원받아 총 240만원을 받습니다.

Q24

이혼 후 재혼가구가 발생 시 이혼 전 가정에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혼 후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부(A)와 모(B)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C)를 대상으로 A와 B가 육아휴직을 사용 후 장려금을 각각 120만원씩 받았습니다. 이후 C의 친권을 가져간 B가 D(새아빠)와 결혼한 경우 D가 C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부모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육아휴직 6개월 연속 사용 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6개월 연속 사용 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했다면,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5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신청자 본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나, 신청자의 배우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소득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Q26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발급이 안되는데 신청자의
가구원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외국인 가정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에 가족관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본인
대상국가의 가족관계증빙 서류를 번역공증 후 첨부해야 합니다.

Q27

이직 후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이 아님)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역시 자녀 한 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수급하므로 이직 후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없기에 이직 후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A회사 근무 시 자녀 홍길동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 사용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1년동안 수급('21. 1. 1. ~ '21. 12. 31.) 이후 B회사로
이직 후 자녀 홍길동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불가능하며(회사
자체적인 인사규정, 취업규칙 있는 경우는 가능)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역시 수급 불가능

→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없기에 장려금 지급 불가

Q28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직원(서울시 산하기관 등)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 직원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조건(서울시 거주, 소득 등) 충족 시
당연히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9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 후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 했습니다.
현재는 퇴사 후 고용보험 미가입된 상태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
했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Q30

'22년 12월~'23년 2월까지 임신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3년 3월~'23년 6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 후 '23년 7월부터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의 경우 '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22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나 출산휴가 후 새롭게 육아휴직을 시작('23년 7월)하고 6개월 연속해서 사용 했다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은 '23년 6월부터 12개월 역산 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Q31

'22년 4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22년 7월에 복직 했습니다. 이후 '23년 5월부터 6개월을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무조건 1년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여성분들의 경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사용하시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시작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6개월 연속 사용했다면,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나, '22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시작시점이 '22년 12월이기에 본 사업의 경우 '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므로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22년 12월부터 계속해서 육아휴직 사용

→ 육아휴직 시작시점이 '22년 12월이므로 장려금 지원 불가

※ '22년에 육아휴직을 사용 했으나 복직 후 '23년에 5월에 다시 육아휴직

→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로 시작시점이 '23년 5월이므로 '23년 5월부터 6개월 연속해서 육아휴직 사용 시 장려금 지원 가능

Q32

자격심사는 누가 하나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하며, 서류 미비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후에도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청이 반려됩니다.

Q33

육아휴직을 6개월 연속 사용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 또는 임신 중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기간은 제외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산휴가 또는 질병휴가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Q34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안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개월 휴직 하였다가 일정기간 복직하고 다시 3개월 휴직하여 분할 사용한 경우 1차분 9개월 사용 건은 휴직기간 6개월이 충족되어 60만원 지원이 가능하나, 2차분 3개월 사용 건은 기간 조건 미충족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간에 복직기간 없이 휴직기간이 연속 12개월이 되는 경우는 1차분, 2차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Q35

장려금 1차분과 2차분 일괄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12개월 연속 사용 후 1차분과 2차분 일괄신청 가능하며, 일괄 신청 시 120만원 지급합니다.

Q36

육아휴직 기간 일할계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장려금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조건이 6개월 연속이므로 미달 및 초과 기간에 대한 일할계산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Q37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신청자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장인, 장모 포함)이며, 배우자와 자녀는 신청자와 주소 및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주소 및 세대 분리 시에는 관계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례

- 1)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녀의 직계존속이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가구원의 범위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므로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 2) ‘부’는 직장건강보험, ‘모’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써, ‘모’가 자영업을 하거나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모’로부터 관련서류(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회사 재직 시 재직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소득은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환산한 후 산정
- 3) 자녀의 부모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의 건강보험료도 소득산정에 포함
- 4) ‘부’와 ‘모’가 직장건강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는 지역건강보험에 별도 가입된 경우
→ ‘부’, ‘모’, ‘조부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
- 5) 임신 중인 태아가 있는 경우
→ 가구원에 포함

Q38

가구원이 해외 장기체류 시 가구원에 포함하나요?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합니다.

* (기간) 90일 이상 / (제출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Q39

부모가 법정 이혼 시 장려금은 '부'와 '모'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모가 법정 이혼 시 장려금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증명서 상 친권자입니다. 다만, 친권자랑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실거주를 함께 하는 '부' 또는 '모'가 장려금을 신청 및 수령하며, 이때 친권자는 장려금을 신청 및 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법정 이혼 후 기본증명서 상 친권자는 아버지인 경우, 원칙적으로 장려금 신청 및 수령은 아버지만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어머니랑 실거주를 하는 경우 어머니가 장려금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있으며, 아버지는 장려금 신청 및 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

Q40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산정표(신청연도)의 중위소득 150% 이하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며, 확인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신청자 및 가구원 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12개월을 역산 후 건강보험료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 아빠가 '23.1.1. ~ '23.8.1. 육아휴직 사용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산정방법(아빠, 엄마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

1. 아빠의 '22년 1월 ~ '22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장기 요양 제외)
2. 엄마의 '22년 1월 ~ '22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장기 요양 제외)

1번(아빠의 건강보험료 평균액)과 2번(엄마의 건강보험료 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산정

Q41

소득조사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10호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행정 비효율을 막기위해 소득조사를 생략합니다.

Q42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최근 12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Q43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임신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 ‘모(임신 중)’, ‘아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4인가구입니다. 단, 이런 상황의 경우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4

가구원수 산정시점은 언제인가요?

가구원수는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조사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12개월 건강보험료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45

12개월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직장을 12개월보다 적게 다닌 경우 등)

해당 기간만큼 평균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시작 전월부터 역산 시 건강보험료를 11개월만 납부 했다면, 11개월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평균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Q46

정산보험료도 평균액 산출 시 포함 되나요?

정산보험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와 모 모두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고 부가 '23년 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부와 모 모두 '22년 1월 ~'22년 12월까지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 '모'가 '22년 3월부터 7월까지 육아휴직을 해서 '22년 3월 ~ 7월까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나오고 '22년 8월에 복직 후 정산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었다면, '22년 8월에 추가적으로 부과된 정산보험료 역시 가산하여 평균액을 산출합니다. 직장가입자가 휴직 시 건강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보험료 고지가 유예되는 것인데 고지가 유예되는 필수보험료는 복직 시 정산하여 일괄 납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산보험료는 휴직 시 내야 할 보험료를 휴직동안 고지가 유예되어 복직 시 일괄 납부하는 것이므로 평균액 산출 시 포함해야 합니다.

Q47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후 부부소득 합산을 하면 되나요?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후 부부소득 합산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민법 제781조 제3항에 의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는 모자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는 법률상의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인지청구를 통해 친부임을 밝혔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Q48

장려금 지급은 누가 하나요?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승인하고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Q49

장려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을 6개월을 연속 사용 시 1차분 60만원이 지원되며, 이후 육아휴직 6개월(총12개월) 연속 사용 시 추가로 2차분 6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자 1명이 육아휴직 대상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2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직기간 6개월 중 중단 기간이 발생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